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문성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201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10월 16일

발 의 자: 문성호, 강석주, 구미경,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민병주, 심미경, 옥재은, 유정인, 이봉준, 이숙자, 이원형, 장태용, 최진혁, 홍국표, 황철규 의원(28명)

1. 주문

-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군포로 피해 진상을 면밀히 조사하여 국군포로 송환과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6·25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포로는 약 8천 명에 불과하고, 6만 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임.
- 현재 국군포로에 관하여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송환된 군인들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군포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위원회 설치 등의 법적 근거를 포함한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 발발한지 7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약 8천명에 불과하고, 6만 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국군포로로 40년 이상 북한에 억류되었던 1994년 조창호 소위와 1998년 장무환 일병의 대한민국 귀환은 개인의 목숨을 건 탈북 노력의 결과로, 이들의 귀환으로 북한에서 국군포로의 참혹한 현실과 수많은 국군포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국군포로와 관련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해당 법률은 이미 송환된 군인들의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북한에서 억류되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국군포로에 대한 진상규명과 송환 노력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땅히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한 국군포로의 기여와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에 따라 국군포로 송환 등 국군포로 문제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되지만, 국군포로의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군포로 문제는 민간차원에서 큰 한계가 있으며, 타국과의 협조 및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사안임에 따라 이를 국무총리 소속의 직속 기구로 두어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1년 6월 24일, 조태용 국회의원 등 29인이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제390회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안타깝게도 2024년 5월 29일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하면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전쟁에 참전하고, 북한에서 오랜 세월 억류되어 고통받는 국군포로의 명예회복과 적극적인 송환노력을 위해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4. 10. 16.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